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6. 10. 민형배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 6.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2024. 7. 1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8. 23.)

상정 · 축조심사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 11. 20.)

상정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중앙정부의 경로당 예산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포함해 국가책임 복지사업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안전망을 강화하고 어르신 삶

의 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과 재정 상황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 등 서비스 편차가 매우 큼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급식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은 전체 42%에 불과합니다. 대전광역시에는 급식 지원 경로당이 전체 경로당의 97.9%임에 반해, 대구광역시는 1% 수준에 그칩니다. 노인복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국가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위한 부식 구입비를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급식 제공을 하고 싶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이 미치지 못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로당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7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현행법상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 제한된 범위의 경로당 지원에서 개정안과 같이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고령화로 경로당 이용 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운영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영위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경로당 운영지원(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제외)’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어(「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원활한 입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은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가 개정되어 부식구입비에 사용이 가능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